

# 서울특별시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 안 경 위

- 발 의 자 : 서준오 의원 외 12명
- 의안번호 : 제1824호
- 발의일자 : 2024년 5월 27일
- 회부일자 : 2024년 5월 30일

### 2. 제 안 이 유

- 서울시는 곳곳에서 산을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산이 존재 하지만 최근 언론에도 보도됐다시피 일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등산로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- 이들은 등산객의 실족 방지를 위해 설치한 계단 등의 등산로를 훼손하고 있음
- 이는 일반 등산객들의 위험을 초래하고 환경 및 등산로를 훼손하는 행위이기에 보행자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고자 함

### 3. 주 요 내 용

- 가. 숲길의 정의(안 제2조제7호)
- 나. 숲길 지정관리(안 제11조)
- 다. 숲길 실태조사(안 제12조)
- 라. 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(안 제13조)

#### 4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, 「도로교통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5. 검토 의견

### 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등산로에 진입함에 따라 등산객의 실족 방지를 위해 설치한 계단 등이 훼손되어 등산객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, 환경 및 등산로를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려는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- 동 조례는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문화 및 산림휴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난 3월 26일 제정(시행) 되었으며, 제정 배경은 서울시의 정책 현황에 맞게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서울시 최초 자연휴양림 사업<sup>1)</sup>, 정원도시 및 산림치유 사업<sup>2)</sup>, 그 밖에 사업 등의 정책의 구체화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임.
- 본 조례안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등산로에 진입하여 등산객의 실족을 방지하기 위한 계단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 취지에는 별다른 이견은 없음.
- 세부적으로 안 제2조제7호는 ‘숲길’을 정의하는 것으로 상위법<sup>3)</sup>에서는 법 제23조에 따라 ‘산림에 조성한 길’을 말하지만, 본 조례안은 ‘자연적·인위적으로 조성한 길’을 같이 지칭하고 있어, ‘자연적으로 조성한 길’의 문구는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상위법을 준용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1)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: 사업기간(2019~2024.7.), 시범운영('24.8.~12.), 공식 개장('25.1.예정)

2) 불암산 힐링타운(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산 42-3 등): 산림치유센터, 유아숲체험장, 철쭉동산, 서울둘레길 등

3) “숲길”이란 등산·트레킹·레저스포츠·탐방 또는 휴양·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(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-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‘숲길 관리계획’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숲길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숲길의 조성·관리 연차별 계획(이하 “숲길연차별계획”이라 한다)<sup>4)</sup>을 수립하도록 지난 2018년 법이 개정되었고, 현재 서울시도 이를 따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---

4) [시행 2018. 8. 22.] [법률 제15394호, 2018. 2. 21., 일부개정]